

2022년 면허신고 안내

□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

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(신고)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(연수교육 이수여부)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.

□ 면허신고 대상

- 1) 2019년 면허취득 회원
- 2) 2019년 면허신고 회원
- 3) 2019. 1. 1.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
- 4) 2012~2018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
- 5)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
- 6)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(*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)
 -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.
 -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.

□ 면허신고 기간 : 면허 취득,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*

2022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(수리완료 기준)

□ 신고내용 : 실태 등 신고서

기본 인적사항, 취업상황, 근무기관 및 지역,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

□ 신고방법 및 절차

1) 온라인 신고

- ▷ 대상 : 시·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
- ▷ 소속 시·도의사회 홈페이지의 'KMA 면허신고센터' 배너를 클릭
- ▷ 소속 시·도의사회 구분
 - 활동회원 / 군의관 / 공보의 / 비의료종사 : 근무처 지역 시·도의사회 기준
 - 휴직회원인 경우 : 거주 지역 시·도의사회 기준

정보조회

- 의협(중앙회) 홈페이지 가입 회원 : 아이디, 비밀번호
- 의협(중앙회)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 : 면허번호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



비밀번호 생성 및 로그인

- 면허신고용 비밀번호 생성 : 최초신고시 생성
- 로그인 : 면허신고용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



연수교육 이수현황 확인

연수교육 이수는 면허신고의 필수사항으로 미이수시 신고 불가
 ※ 연수교육 이수평점 확인 방법: KMA교육센터 >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> 이수평점 확인 가능



본인인증

휴대폰 또는 I-PIN 인증



신고 전, 개인정보 수정

면허신고서 작성 전에 정보 확인 및 수정



회비납부현황 확인

대한의사협회 및 소속 지역의사회 회비납부현황 확인

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



신고서 작성

기본인적 정보 및 취업사항 정보 입력



면허신고 완료

신고 확인증 출력 및 신고결과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출력 및 확인

※ 문의처 : 소속 시·도의사회 사무국

2) 기타 신고

- ▷ 대상 : 해외체류 회원 등 시·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
- 1) 해외체류 회원 : 이메일(silversook@kma.org)을 통한 신고서 접수.
 - 2)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: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

신고서 다운로드

- KMA면허신고센터(<https://doc-lic.kma.org/>)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(www.kma.org) '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' 【붙임 1】 다운로드



신고서 작성

- 기본 인적사항, 취업상황, 신고서 작성일자, 신고인 성명 작성 후 서명



신고서 발송

- 발송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8층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(우. 04373)
* 등기우편 발송

※ 문의처 :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(T. 02-6350-6610, 6511)

□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

1) 미신고시 행정 처분 : 면허의 “효력정지”

【행정처분 절차】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, 의견제출 기회 부여 → 면허(자격)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→ 도달시점(또는 처분일)부터 면허(자격) 효력 정지

2)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: 신고 “즉시”

-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(자격)신고를 하면, 신고 “즉시” 면허(자격) 효력 회복(신고일자 기준 소급)

□ 연수교육 신고요건

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(8평점) 이상 연수교육 이수 충족. 단,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.

* 2019년도 이후 면허신고 주기 3년 마다 필수 2평점 포함(아래 *연수교육 시간 참조)

□ 연수교육 시간

1)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: 8시간(8평점) 이상

-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만(8시간 미만) 이수한 경우,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(8평점)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.

* (예) '19년에 8시간, '20년 4시간, '21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'22년도 이수해야 할 연수교육 시간 : 16시간 이상(= '19년, '20년 잔여 연수교육 8시간 + '22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)

-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추가 교육 이수는 허용되나,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연수교육이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는 않음.

2)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: 2시간(18.1.1 시행) 이상

【필수과목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】

- 감염관리,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, 의약품 부작용사례,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.
- 성희롱·성폭력·폭력 및 인권교육(미혼모·부 인식개선 포함), 감염관리, 장애인건강

권,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(신생아 심폐소생술 포함 권고), 자살예방(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권장), 아동학대예방, 노인학대예방,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교육과정.

- 의료윤리,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“별도 표시”하여 연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,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 안내한 교육프로그램.
-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(「소중한 내 면허, 잘 관리하자」, 보건복지부) 활용하는 방안 교육프로그램.

【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】

-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(기본소생술, 전문심혈관 소생술, 신생아 심폐소생술 등)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취안전 가이드라인 및 환자안전에 관한 교과목을 교육과정('15.2월,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).

3) 해당 업무 미 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

○ 연수교육이 유예된 연도(연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의미)의 다음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(17. 1. 1. 이후 면허신고자 부터 적용)

- 연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: **12시간** 이상
- 연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: **16시간** 이상
- 연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: **20시간** 이상

*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 포함.

4) 연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

-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·야간 구분 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,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.
- 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'19년도에 의학대학원이 아닌 치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,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.
- 논문지도학기 과정*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(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)이 되는 경우,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
 - * 석사과정은 1년,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
-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, 당해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.
 - (예1) '19. 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
 - (예2) 군대에서 일반사병(사회대체복무도 포함)으로 '19.11월 입대 후 '21.8월 제대한 경우, '19년 연수교육 이수, '20년 연수교육 면제, '21년 연수교육 면제
-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, 면허 신고 시 연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
(예: 1·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,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이라면 연수교육 면제)

■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

(예) '19. 3. 17 ~ '19 .9. 16 : 6개월 미만

'19.2. 2 ~ '19. 8. 2 : 6개월 이상

'19. 4. 2 ~ '19. 10. 3 : 6개월 이상

※ 비전속근무자(주 3일 근무 등)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 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('19.1.1(최초근무일)~'19.6.28일(최종 근무일)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)

■ 해당연도 출산자(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)는 해당연도만 면제

※ **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**하며 여성만 면제

※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연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

(단,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연수교육 면제)

(예1) '19.5.1일 출산 후 '19.7.29일 복직한 경우는 '19년도 연수교육 면제

(예2) '19.11.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('19.12.21~'20.12.20), '20.12.21에 복직한 경우, '19년도 연수교육 면제, '20년도 연수교육 유예

(예3) '19.2.1일 출산 후 퇴사한 경우, '19년도 연수교육 면제

(예4) '19.12.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('20.3.1~'22.2.28), '22.3.1에 복직을 한 경우, '19년도 연수교육 면제, '20년 연수교육 유예, '21년 연수교육 유예, '22년 16시간

□ 연수교육 면제/유예 대상자 및 증빙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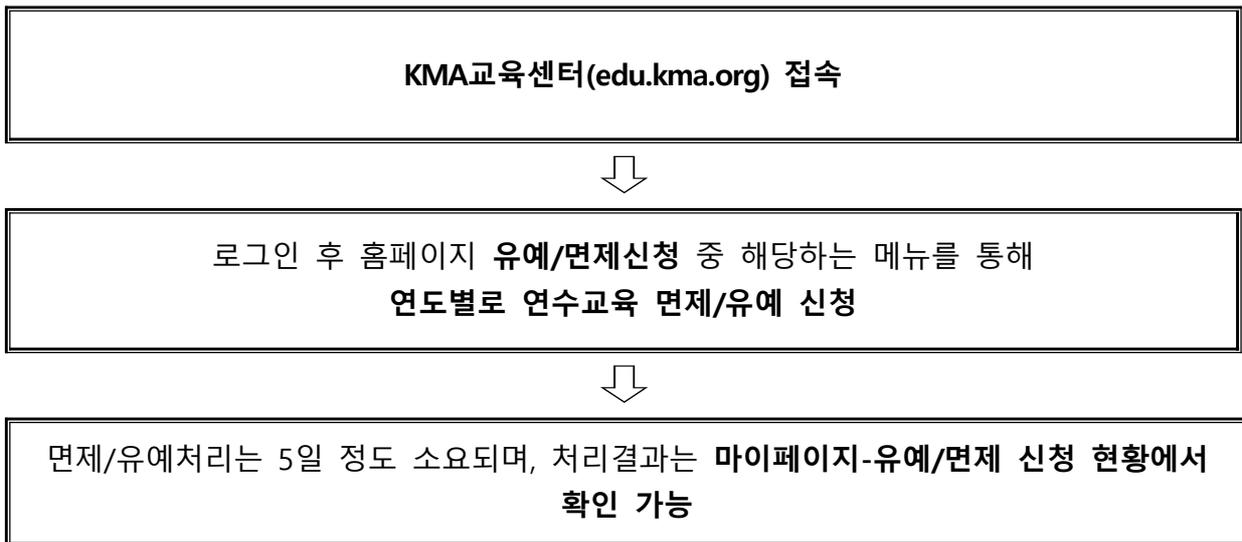
구분	대상자	증빙서류
면제	1) 전공의	- 재직증명서(인턴, 레지던트)
	2)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(의학과)	-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
	3) 신규 면허 취득자	- 면허증 사본
	4)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 [해당 예] ① 군대에 사병(사회대체복무도 포함)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 ② 육아휴직중인 자(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) ③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경우	- 출생증명서, 분만확인서, 출산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, 휴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-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
유예	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	- 휴·폐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·폐업을 한 연도에는 휴·폐업 사실증명서 - 휴직자 :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(휴직기간 명시) - 퇴직자 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- 교수및연구원 : 재직증명서(비고란에 직위/직책 명시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·행정기관/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: 재직증명서 - 해외체류자 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- 병원 : 입퇴원 확인서
--	---

-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,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·유예 신청을 해야 함.
- 보건복지부장관이 “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” 또는 “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”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·유예 대상자 분류.
- *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의료인에게도 면제·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면제·유예 인정.

- ※ **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** :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c.or.kr) 공인인증서 무료발급 가능 또는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선전화(T. 1577-1000 → 11번(상담원 연결) → 본인 확인 후 Fax 요청)로 무료발급 가능.
- ※ **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** : ① 민원24(minwon.go.kr)에서 공인인증서로 무료발급 또는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.

□ **연수교육 면제/유예 신청 방법**



- ※ 온라인 신청이 안 될 경우 면제/유예신청서 **【붙임 2】** 와 함께 증빙서류를 Fax 02-792-5208로 접수하며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요망
- ※ 문의처 : **KMA교육센터**(대한의사협회 학술국 학술교육팀) T. 02-6350-6565, 6529

【붙임 1】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

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기본 인적사항	성명	면허번호
	직종 [] 의사 [] 치과의사 [] 한의사 [] 조산사 [] 간호사	
	면허발급 연월일	E-mail
	주소	
	연락처 일반전화	휴대전화

취업상황	활동 여부 ([]전속, []비전속) 의료기관 근무 [] 비의료기관 근무 [] 미활동
	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[] 종합병원 [] 병원 [] 요양병원 [] 의원 [] 치과병원 [] 치과의원 [] 조산원 [] 보건의료원 [] 보건소 [] 보건지소 [] 한방병원 [] 한의원
	근무 의료기관 명칭
	근무 의료기관 주소
비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[] 연구소 [] 기업체 [] (준)정부기관 [] 학교 [] 자영업 [] 기타()	
근무지 주소	

연수교육 및 신고 관련	최근 신고 연도
	연수교육 이수상황 총 ()시간 이수 의무 중 ()시간 이수

「의료법」 제2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대한의사협회장 귀하

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- 가. 「의료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「의료법」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: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
 - 나.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: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
2.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,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3. “전속”이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4.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“의료기관 근무자”란만, 그 외의 의료인인 경우에는 “비의료기관 근무자”란만 작성합니다.
5. “근무 의료기관 명칭”란 및 “근무 의료기관 주소”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,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.
6.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7.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8. 연수교육(의무이수 시간: 연간 8시간)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【붙임 2】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

연수교육 [] 면제 [] 유예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5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자	성명	면허번호
	직종 [] 의사 [] 치과의사 [] 한의사 [] 조산사 [] 간호사	

신청사유	면제·유예 신청 대상 연도
	구체적 면제사유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6항) [] 1. 전공의 [] 2. 의과대학·치과대학·한외과대학·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[] 3.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[] 4.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	구체적 유예사유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7항) [] 1.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[] 2.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한의사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각 중앙회의 연수교육 담당 부서